

2022년도 (사)인천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 (본) 예산서 총칙

제 1 조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의 (본) 예산(안) 총액은 세입3,374,000,000원, 세출 3,374,000,000원으로 한다.

제 2 조 1) 세입. 세출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.(관 또는 항 단위)

2) 세입의 주요 재원

관/항	사업수입	이월금	잡수입	총액
예산	3,020,220,000	353,580,000	200,000	3,374,000,000

2) 세출의 주요 재원

관/항	사무비	재산조성비	사업비	예비비 및 기타	총액
예산	188,245,521	4,200,000	3,181,220,052	334,427	3,374,000,000

제 3 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교부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등은 본 예산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.

제 4 조 예산의 전용에 있어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 제10조, 제16조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.항.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대표 이사(또는 시설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제 5 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및 후원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6 조 제4조와 제5조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, 법인이사회회의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 조 기타 회계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며 그 외 예산 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.